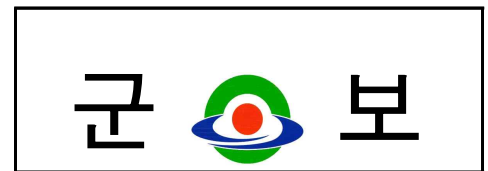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20호 2023. 1. 26.(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46호)
-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6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제4항)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법에서 18세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 대상을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제4조)

- 라.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 마.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리·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규정함에 따라 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도록 단서에 신설(안 제8조제2항)
- 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 및 개정(안 제12조)
- 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whitek765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 054-650-68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
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청구인서명부”를 “주민투표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명부”를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다음 각호”를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군”을 “예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위원회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사항은 위원회”를 “사항은 심의회”로 한다.

-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의”를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 4항 및 제5항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 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구인서명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예천군(○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리.반)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책무) ① ~ ③ (생략)	제2조(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 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u>외국인</u> ----- ----- ----- -----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u> 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자</u> 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u> ----- ----- ----- ----- ----- <u>외국인은</u>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
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
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
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
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
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
요결정사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
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
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
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
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
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다만, 주민
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
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
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반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서명부(전차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

② 삭 제

③ · ④ (생 략)

<신 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
는 임명한다. <후단 신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 4. (생략)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

----- .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예천군 -----
2. ~ 4. (현행과 같음)

⑤ -----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⑥ 심의회-----

⑦ 심의회-----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⑩ 심의회-----

⑨ <u>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u>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u>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u>법 제13조제2항의</u>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군보·게시판·일간 신문중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u><삭 제></u> ⑪ ----- <u>심의회</u>의 운영----- <u>사항은 심의회</u>----- -----. 제16조(공표방법 등) ----- ----- ----- <u>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u> ----- ----- ----- -----.
--	---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022. 12. 19.일부개정, 2023. 1.1.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예천군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변경 :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규칙 재편

- 자치단체 공통규정은 행안부 훈령으로 규정
- 자치단체 규칙에는 훈령에서 위임한 8개 조문만 존치
 - 징수관·재무관의 직무위임, 재정 사항의 합의 등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약기준 정비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aya112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3) 팩스 : 054-650-61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전화 : 054-650-68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를 “「예천군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의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

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예천군의회회의장(이하 “군의회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이하의 공사”를 “이하인 공사”로, “이하의 용역·제조”를 “이하인 용역·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실·과장 등”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를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실·과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의장”을 “군의회회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97조”를 “제77조”로, “직무대리규정”을 “직무대리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 출납원”을 “출납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35조제1항”을 “제105조제1항”으로, “직무대리규정”을 “직무대리규칙”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예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 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군 의 회	제 1관서 (읍·면 제외)	읍·면	기타 관서
회 계 책 입 관	기획예산실장	-	-	-	-
징 수 관	부군수	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분 입 징 수 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및 담당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또는 세입업무담당	-	-
재 무 관	부군수	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 입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 및 담당관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부군수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및 담당관	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군수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및 담당관	사무과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실장	-	-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	-
지 출 원	경리팀장	의정팀장	회계지출업무팀장	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 입 금 출 납 원	징수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의정팀장	세입업무팀장	부면장 (예천읍은 재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	각 부서별 서무업무팀장	-	서무업무팀장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서무업무팀장, 담당이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재무업무담당자	재무업무담당자	재무업무담당자	부읍·면장	서무업무팀장, 담당이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비고 1. 0000팀장 :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읍·면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를 제외한 관서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7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경비	“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8. 기타 군에서 정한 경비	“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7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u> <u>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u>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② (생략)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 및 제46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예천군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

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계약사무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리에 관한 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3조제5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제1관서 및 읍·면의 계약업무는 예천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예천군의회(이하 “군

의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
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
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
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
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삭 제>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천군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 계약체결 이후에는 해당관서 및 읍·면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

-----.

다만, 예천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의 경우 예천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 4. (생략)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단서 신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 3. (생략)

② -----

----- . <단서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

----- .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 이하인 공사-----
----- 이하인 용역
· 제조 -----

2. · 3. (현행과 같음)

② -----

----- .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예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
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
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
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
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
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
아야 한다.

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의장
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 ⑤ (생략)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

----- 훈령 제1

1조제1항에 따른 -----

- 실·과장 및 담당관-----

-----.

1. -----

----- 제조·용역 또는 물

건의 매입과 -----

--

2. 실·과장 및 담당관 -----

-----.

-----.

② ----- 군의회의장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제12조제1항 -----

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
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
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
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
하는 것” 중 소모품의 매입·제
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
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
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
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
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
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

-----.

② --- 제12조제2항 -----

-----.

<삭 제>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 제77조-----

----- 직무대리규칙-----

-----.

② -----
--- 출납원 -----
-----.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
서 작성) ① -- 제105조제1항 -

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u>직무대리규정</u>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 ---- <u>직무대리규칙</u>----- ----- ----. ② (현행과 같음)
--	---